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95 발의연월일: 2024. 12. 9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윤종오 · 이연희

한민수 · 장철민 · 채현일

정성호 · 서영교 · 염태영

김태선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,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,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.

또한,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,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.

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,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 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, 계엄의 요건 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(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"을 "국회의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.
- ③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과 정당 등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	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
~ ⑥ (생 략)	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
	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
	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
	<u>야 한다.</u>
제13조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	제13조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
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	<u>①</u> 국회의원은
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	
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	
<u> <신 설></u>	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
	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포 또는
	구금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과
	정당 등의 정치활동은 금지되
	지 아니한다.